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전체 정비
-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안 제2조)
 - "투자유치", "본사", "공장", "연구소", "사업개시일"의 정의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건을 구체화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20조제1항)
 - “신규 고용” 인원에서 “신규 채용 상시 고용”으로 구체화
-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외국인 투자 기업과 일치(안 제19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 기업이전투자 시 지원기준을 신규투자지원 기준과 일치(안 제22조제3항)
 - 투자금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관내 기존기업의 증액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
 -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 시 지원
(안 제23조의1제1항)
 -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안 제23조의1제2항)
-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에게도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6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특별지원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
- 지원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명시
 - 지원대상 사업을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로 기한
명시(안 제30조제1항제3호)
 -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때로
기한 연장(안 제30조제1항제4호)
- 투자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건축법 제2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구미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의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의 항 번호를 삭제하며, “다음 각 호의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신규”를 “신규 채용하여 상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고용하기”를 “상시고용하기”로 한다.

제14조제2항과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중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30이상”을 “30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고용하는”을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제1항 중 “고용하기”를 “상시고용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을 “공장 또는 연구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
보조금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5%범위”를 “20%범위”로, “5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를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을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신규고용”을 “신규 상시고용”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4조 전단 중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4. 시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6 장 보 칙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사업을”을 “관련사업을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임대계약”을 “임대 또는 분양계약”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으로,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을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1조의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이란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 제1항제4호----- -----.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 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구미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
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
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
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
용 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 각 호-----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생략)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 ----- -----
제 3 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u> 감면은 「구미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감면) ----- ----- <u>재산세의</u> ----- ----- -----.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 ----- ----- -----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

----- 제14조
제4항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
----- 신규 채용
하여 상시-----

-----.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제14조제1항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

- 상시고용하기 -----

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지원은 당해

-----.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

----.----- 제14조의2에 따라 -----

-----.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3. (생략)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

----- 30 이상-----

--.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 각 호-----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

② 제1항에 따른 -----

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
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
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
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
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
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하 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
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
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100만원-----

----- 6억원
-----.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상시고용하기

-----.

② 제1항에 따른 -----

----- 100만원-----

----- 6억원-----
-----.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

-----.

1. <u>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u>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 보조금	1. <u>공장 또는 연구소</u>----- -----
2. <u>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u> <u>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u> <u>보조금</u>	2. <u>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u> <u>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u> <u>등 시설보조금</u>
3. (생 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u> <u>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u> <u>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u> <u>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u> <u>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u> <u>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② (생 략) ③ <u>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u> <u>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u> <u>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u> <u>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u> <u>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범위</u> <u>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u> <u>지원 할 수 있다.</u>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u>제19</u> <u>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 제3</u>	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 ----- -----.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범위</u> <u>안----- 50억원까지</u> <u>지원할 수 있다.</u>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u>제19</u> <u>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u>

항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
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
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 산
업지원서비스업

3. (생략)

<신설>

제22조제3항에 따른 -----

----- 신규 상시고용 -----

호의 어느 하나-----

1. 제18조에 따라 -----

2. ----- 제121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관내 기존기업의 투자
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
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
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
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
용하는 경우는 경상북도와 협의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
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
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처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이 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이 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
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구성에 필
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
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와
협의에 따른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
연) 시장은 -----

제25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
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
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25조(기금의 사용) -----

호의 어느 하나-----

때 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생 략)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1.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현행과 같음)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4. 시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2. <u>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3. <u>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u>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생략)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 <u>제1항에 따른</u> ----- ----- ----- ----- -----.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

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
수하지 아니한 때

5. ~ 8. (생 략)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생 략)

<신 설>

환) ① ----- 따라

-----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3. ----- 관련사업을
3년 이내 -----

4. 임대 또는 분양계약-----
---- 3년 -----

5. ~ 8. (현행과 같음)

9. 제29조에 따른 -----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
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
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u>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u> <u><신 설></u> 제31조(실적보상) ① (생 략) ② <u>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① <u>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u> ----- ----- <u>제12조부터 제13조까</u> <u>지의 규정에 따른</u> ----- -----. ② <u>제26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1조의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u> <u>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u> 제31조(실적보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	--

관 련 법 령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이전보조금 지원)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1(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대한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①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 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7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